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5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1. 5. 3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한글도시 추진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,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신규 행정수요 적극대응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분장사무 조정

1) 주민자치국(안 제7조)

가)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관리,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

나) 혁신교육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3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4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없음 (여성가족과-19924호, 2021. 5. 18.)

라. 입법예고: 5. 17. ~ 5. 24. (7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분장사무의 대강을”을 “분장사무를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·보좌기관의 설치)”를 “(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·보좌기관 설치)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관리”를 “관리, 한글도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교육정책”을 “혁신교육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이를 따로 조례”를 “조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<u>분장사무의 대강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분장사무</u>를 ----- -----.</p>
<p>제4조(<u>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기관·보좌기관의 설치</u>)(생략)</p>	<p>제4조(<u>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·보좌기관 설치</u>)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7조(주민자치국에 두는 과) ① (생략) ② 주민자치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·2. (생략) 3.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<u>관리</u> 등에 관한 사항 4. <u>교육정책</u>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. (생략)</p>	<p>제7조(주민자치국에 두는 과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<u>관</u> <u>리, 한글도시</u> --- 4. <u>혁신교육</u> ----- -----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설치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·위치 및 관할구역은 <u>이를</u>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16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조례</u>-----.</p>

근 거 법 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조직운영을 위한 담당 신설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등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
- 그 개정 내용이 조문의 뜻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선언적 형식 등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.

3. 작성자

- 소 속: 기획예산실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성 명: 권일구
- 연 락 처: 052-290-3142